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 박홍식(044-201-2351), 사무관 정창남(2357)
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정희규(044-201-7001), 사무관 이주원(7010) / 제공일: 11월 7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

-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,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실시

○ 시군에서 11월 15일까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고,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하순부터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

※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(`20. 3.25일)

○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
- 축사면적 1,500㎡ 이상 : 부숙후기·완료
- 축사면적 1,500㎡ 미만 : 부숙중기

○ 농가는 배출시설(축사) 면적에 따라 년 1~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
- 허가규모 배출시설 : 6개월에 1회 검사
- 신고규모 배출시설 : 1년에 1회 검사

❑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, 수질오염 방지,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가축분뇨법)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'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' 이 시행된다.

○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 축사면적에 따라 1,500㎡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, 1,500㎡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
○ 또한, 배출시설(축사)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*은 6개월에 1회, 신고규모 배출시설**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.

* 허가규모 : 한우・젖소 900㎡ 이상, 돼지 1,000, 닭 3,000

** 신고규모 : 한우・젖소 100㎡ 이상, 돼지 50, 닭 200

❑ 이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,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(소 100㎡이상, 돼지 50㎡이상, 가금 200㎡이상) 농가*이며,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(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)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.

*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

❑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·운영한다.

○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, 환경부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,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.

○ 지역단위 TF는 시군(축산·환경부서 등), 일선 농축협,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,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,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,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.

❑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*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,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* (예시) 퇴비사 및 장비 부족, 퇴비 부숙 관리요령 부족 등

○ 또한,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·배포(11.15)하고,

○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,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(11.11~11.22)하고,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.

❑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,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붙임1 **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**

* 해당칸에 작성 또는 ☑ 표시

① 농장명 (농가명)			② 연락처		
③ 주 소					
④ 축 종			⑤ 평균사육두수		
⑥ 축사면적	1동	(가로 × 세로) ㎡	⑦ 퇴비사 면적	1동	(가로 × 세로) ㎡
	2동	(가로 × 세로) ㎡		2동	(가로 × 세로) ㎡
	3동	(가로 × 세로) ㎡		3동	(가로 × 세로) ㎡

⑧ 분뇨처리형태 □ 위탁처리 (%), □ 자가처리 (%)

⑨ **깔짚·퇴비 교반장비** : □ **있음**(장비명 :), □ **없음**

* 트렉터, 스키드로더, 굴삭기, 관리기 등

⑩ **깔짚 및 퇴비 교반** : □ **교반함**, □ **교반안함**

(교반하는 경우 : **깔짚** 회/월, **퇴비** 회/월)

⑪ **미생물제제** : □ **사용함**, □ **사용안함**

*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 칸에 사용빈도 **매일**, **주1회**, **월1회** 등 기재

사료첨가	음수 급이	깔짚 살포	퇴비더미 살포

⑫ **퇴비 부숙도 검사** : □ **신청**, □ **신청 안함**

⑬ **퇴비 부숙관리 컨설팅** : □ **신청**, □ **신청 안함**

퇴비사 활용	교반장비 활용	교반기술	기타

⑭ **부숙도 이행과 관련한 애로사항(건의사항)**

○

○

○ 예시) 축사 및 퇴비사가 좁아서 교반관리 어려움

00 시장·군수 귀하

붙임2 **농가 신청서(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(자가체크)) *칼라출력 요망**

○ 농가명 : ○ 축종(사육두수) : ( )

○ 주 소 : 도 시·군 읍·면 리

평가항목		평가 내용			점수
관능평가 항목	① 색깔 & 형상 (20점)	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(2점)	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(3~11점) 5점 8점 11점 * 부숙완료 퇴비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	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 소멸(12~20점) * 색과 입자가 고르고 균일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	
	② 냄새 (20점)	아주 강한 축분냄새를 느낄 정도(2점)	축분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(3~11점) * (5점) 축분냄새 식별, (8점) 약간의 축분냄새, (11점) 미세한 축분냄새	축분냄새 완전 소멸 및 흙 냄새 등 퇴비냄새(12~20점)	
	③ 수분 (15점)	70%이상(2점)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	60% 전후(3~9점)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	50%전후(10~15점)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음 부스러기가 털어질 정도	
농가기록 항목	④ 퇴비화 기간 (20점)	가축분 자체 / 20일 이내(2점)	20일~6개월 미만(3~11점)	6개월 이상(12~20점)	
			기간(일) 20~60 61~120 120~180 점수 5 8 11		
		축분 + 수분조절재 / 20일 이내(2점)	20일~3개월 미만(3~11점)	3개월 이상(12~20점)	
			기간(일) 20~30 31~60 61~90 점수 5 8 11		
	⑤ 뒤집기 횟수(10점)	2회 이하(2점)	3~6회(3~6점)	7회 이상(7~10점)	
		* 퇴비화 기간 동안 뒤집기 횟수			
	⑥ 강제 통기 (10점)	통기 안함(2점)	통기상태 보통(3~6점) * 퇴적송풍식 : 간헐적 운영 정도에 따라	통기상태 양호(7~10점) * 기계식교반식 : 주 3회 이상(10점) * 퇴적송풍식 : 상시 가동(10점)	
가점 항목 (발생시)	⑦ 부숙중 최고 온도 (5점)	50℃이하(2점)	50~60℃(3~4점)	60℃ 이상(5점)	
		<측정방법> ▶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 측정 ▶ 철봉온도계 등 활용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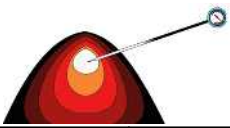			
	⑧ 방선균 여부 (5점)	없음(2점)	보통(3~4점) → 중간 정도 ←	많음(5점)	
		* 퇴비더미 내부(얕은 층)의 방선균 생성여부			
점수 합계		미숙·부숙초기 : 40점 미만	부숙중기 : 40~59점	부숙후기 : 60~80점	부숙완료 : 81점 이상

* 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제조와 이용(농촌진흥청, '97.12월) 표준영농교본(89호)을 재구성한 자료로 농가의 자가 참고자료에 해당(추후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쟁송자료로 활용 불가